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낭 만 관 광 과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라면축제」는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와 축제 규모 확대를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미식축제로 성장하고 있으며, 축제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나. 이에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과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갖춘 (재)구미문화재단의 역량을 활용하여 축제 기획·운영,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현장 운영 및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구미라면축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라면축제

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공공위탁 동의안 등)

마)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바)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2) 필요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구미라면축제 운영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함.

나)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규모 확대에 대응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전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재)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축제 운영 경험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1) 구미라면축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축제 참여업체 및 관계자 관리

4) 축제장 조성 및 현장 운영

5) 축제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홍보

6) 축제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

7) 축제 예산 집행 및 정산

8) 방문객 만족도 조사 및 축제 성과관리

9)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라. 위탁시설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연간 945백만원 정도

2) 산출근거 : 축제 콘텐츠·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축제장 운영, 안전관리, 성과관리 등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완료)

아. 위탁구분 : 신규위탁 (수탁기관 :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3. 부서의견

가. 구미라면축제는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와 축제 규모 확대에 따라 기획·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나. (재)구미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예술 및 축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축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획부터 운영 및 성과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다. 이에 구미라면축제 운영사무를 (재)구미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축제 운영 경험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3)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라. 수탁기관 : (재)구미문화재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공위탁 동의안 등)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공공위탁 사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5.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관리
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라면축제의 기획·운영,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축제장 운영, 안전관리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라면축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구미문화재단에 축제 운영사무를 위탁

○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축제장 운영, 안전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출	○ 위탁사업비	945	945	945	2,835
	계	**945**	**945**	**945**	**2,83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	-	-	-
도 비	95	-	-	95
시 비	850	945	945	2,740
민 간	-	-	-	-
기 타	-	-	-	-
합 계	**945**	**945**	**945**	**2,835**

5. 부대의견

○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는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낭만관광과 축제기획팀 신민우(054-480-265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945,000	
기획단 운영	110,000	○ 축제기획 용역 1식 : 20,000천원 ○ 푸드디렉팅 용역 1식 : 45,000천원 ○ 홍보대행 용역 1식 : 45,000천원
홍보·광고	140,000	○ 온라인·SNS 광고 1식 : 35,000천원 ○ 옥외·매체광고 1식 : 40,000천원 ○ 인쇄·홍보물 제작 1식 : 25,0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1식 : 17,000천원 ○ SNS·숏폼 콘텐츠 제작 1식 : 23,000천원
안전관리	50,000	○ 안전관리 용역 1식 : 40,000천원 ○ 의료·응급지원 및 안전시설 1식 : 10,000천원
행사대행료	645,000	○ 공연·문화 프로그램 및 출연진 섭외 1식 : 150,000천원 ○ 라면레스토랑 운영 1식 : 100,000천원 ○ 라면 체험·참여 프로그램 1식 : 80,000천원 ○ 축제장 시설물 설치·운영·철거 1식 : 150,000천원 ○ 전기·조명·급배수 등 기반시설 1식 : 50,000천원 ○ 환경·위생 및 편의시설 운영 1식 : 65,000천원 ○ 축제 현장 운영인력 1식 : 50,000천원

소 관 부 서		낭만관광과
입	과 장	장 정 수
안	담 당	신 재 우
자	담 당 자	신 민 우 (480-2652)